

울산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가단1007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채동우, 이준민, 홍하진, 박아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호

변 론 종 결 2022. 6. 15.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6. 1. 18.자 증여계약을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C는 2016. 1. 18.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울산지방법원 등기와 2016. 1. 19. 접수 제108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1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자는 원고의 처인 D이므로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 ① 원고의 사위 E은 2007년경 납골당 사업을 하는 C에게 10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C는 사업의 이익금 중 15%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위 금액을 빌려준 것인지, 투자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원, 피고 사이의 주장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갑 제5호증 이행각서의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비추어 C가 위 돈의 원금 반환을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사용처로 하여 빌려준 것으로 본다). E은 C에게 처가에서 위 돈을 빌려온 것이라고 말하였다.
- ② C의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자 E은 빌려준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C는 2017. 10. 27.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2017. 12. 30.까지 원금 1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이행각서 작성 당시 E은 처가에서 빌려온 돈이므로 처가 쪽으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C가 이를 받아들여 채권자를 원고의 처인 D으로 기재하였다. 이후 E은 원고 및 D과의 합의하에 C에게 D이 아닌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C가 이를 승낙하였다. [갑 제5호증의 이행각서에는 채권자 D의 이름에 줄을 그어 삭제한 후 원고의 이름인 A를 기재하고 그 위에 누군가의 무인이 찍혀 있는데, 위와 같이 수정을 한 사람이 C인지 아닌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증인 E은 C의 무인이라고 주장하나 그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만 증인 E, F의 각 증언 등에 비추어 E이 채권자를 A로 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C도 이를 승낙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③ C는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후인 2018. 4. 2. 및 2018. 5. 2. 원고 명의 통장으로 합계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④ 원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2020차전101156호로 대여금 1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명령이 2020. 2. 5. C에게 송달되었으며, C가 이의하지 않아 2020. 2. 20.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E이 돈을 빌려 줄 당시 C가 원고를 비롯한 E의 처가 쪽 사람들을 잘 알지도 못하였던 점, ② 돈을 빌려주는 조건도 E이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C가 돈을 변제할 상대방도 E이었던 점, ④ E이 돈의 출처에 관하여 처가에서 빌려온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돈을 마련한 경위를 설명하거나 변제에 관한 책임을 무겁게 하기 위하여 한 말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돈을 빌려줄 당시 C와 E 사이에는 E이 채권자로서 돈을 빌려주고 변제도 E에게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할 무렵 E이 원고 및 D과의 합의하에 자신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C가 원고에게 직접 돈을 변제하도록 하였고, C도 이를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

E이 C에게 돈을 빌려준 시기는 2007년경으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법률행위시인 2016. 1. 18. 보다 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위 증여계약 이후에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피고는 위 증여계약 당시에는 위 대여금 채권의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이행기에 채무 이행을 위태롭게 하는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위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성립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울산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유일한 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참조),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취소범위 및 가액배상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H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마친 직후인 2016.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H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그 피담보채무액은 23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액반환만을 구할 수 있다.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062,531,3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공동담보가액은 832,531,310원(=이 사건 부동산 시가

1,062,531,310원 -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합계 230,000,000원)이 되는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는 것인바, 위

공동담보금액보다 적은 금액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00,000,000원이 가액반환 범위가 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100,00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박종열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울산광역시 중구 대 331㎡

2.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99.07㎡

2층 87.12㎡

